

의안번호	2210766
의 퇴 인	이언주 의원
회 답 일	2025. 9. 16.
추계번호	25A3252

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,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800만원, 2031년 8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4,000만원(연평균 2,8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5조)	100	—	—	—	—	100	20
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(안 제7조)	8	8	8	8	8	40	8
합 계	108	8	8	8	8	140	28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7조(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	○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	의무규정
3	안 제8조(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의 설립 등)	○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함(제1항) ○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제4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4	안 제9조(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의 지정 및 지원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반도체, 센서, 통신장치, 소프트웨어, 플랫폼 기술,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(이하 “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연구개발, 실증·시험·평가·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－ 2. 공급망 안정화, 국산화 촉진 및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－ 3.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또는 우선 처리를 위한 조치 －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개발 또는 생산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개발 또는 생산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(제4항)	
5	안 제10조(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실증시험센터, 데이터 센터, 교육훈련시설, 공동연구개발시설,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설, 국제협력 거점시설 등의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－ 2.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연구개발, 실증·시험·평가·인증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－ 3.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의 행정절차 간소화 또는 우선 처리를 위한 조치 － 4.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－ 5.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－ 6.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지원 － 7.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의 해외 인증 획득 및 해외 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 －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에 입주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)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에 입주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6	안 제11조(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기업, 중소기업·중견기업·대기업 또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에 대하여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－ 2.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－ 3. 해외진출 촉진 및 판로 개척, 기술이전 및 사업화 및 금융 지원 －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7	안 제12조(자율주행 모빌리티 구매 등 지원)	○ 정부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자율주행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8	안 제13조(시범운행 데이터의 제출 및 관리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 제출에 소요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거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또는 그 밖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9	안 제14조(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수집·분석·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(제1항) ○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 거래 및 유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3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거래 및 유통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보안 조	재량규정 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치, 분쟁의 조정 등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(제4항)	
10	안 제15조(전문인력 양성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11	안 제16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)	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	○	—
2	안 제7조(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및 운영)	○	—
3	안 제8조(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의 설립 등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4	안 제9조(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의 지정 및 지원)	X	
5	안 제10조(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)	X	
6	안 제11조(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)	X	
7	안 제12조(자율주행 모빌리티 구매 등 지원)	X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8	안 제13조(시범운행 데이터의 제출 및 관리)	X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9	안 제14조(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)	X	
10	안 제15조(전문인력 양성)	X	
11	안 제16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)	X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산업기술개발(R&D)(스마트카) 사업 등을 통해 일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(안 제5조·제7조)에 대해서만 추계함
-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안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(산업통상자원부)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 (내역)	회계기금 (소관)	2022 결산	2023 결산	2024 결산	2025 예산
자동차산업기술개발 (R&D)(스마트카)	일반회계	15,250	39,683	82,813	115,684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”으로 하며,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5년 주기 연구용역비로 함
 - 제정안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유사한 연구용역 사례를 고려하여 동 계획의 수립에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
 - － 유사 연구사례로는 “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연구”(국토교통부, 2021년, 4,840만원), “자율주행 모빌리티 안전강화 기반조성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”(경상북도, 2018년, 7,800만원), “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조성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”(전북특별자치도, 2018년, 1억 9,808만원) 등
 - － 동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므로 법 시행 첫해인 2027년에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제정안에 따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3]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5조)	100	—	—	—	—	100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(안 제7조)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회의수당”으로 함
 - 제정안은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의 구성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
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,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민간위원 수는 과반인 8명으로 가정함

- 동 위원회의 심의·조정 안건을 고려하여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
- 동 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다음과 같음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부처 간 정책·사업의 총괄·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3.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·시험·인증 기반 확충, 부품·장비·소프트웨어·자율주행 플랫폼 등 핵심품목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
4.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수집·분석·거래 및 유통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전략에 관한 사항
6.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
7. 규제개선 및 규제특례 부여 등 혁신 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민간위원 1인당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25만원으로 할 경우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4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□ 제정안에 따라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4,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4]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및 운영 (안 제7조)	8	8	8	8	8	40	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